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52843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396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528435 판결

전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D

5. E

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4. 6. 24.(피고 주식회사 A, B, C, E에 대하여)

2014. 8. 19.(피고 주식회사 D,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4. 9. 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726,288,530원 및 그 중 725,347,9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E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69,156,930원 및 그 중 468,495,136원에 대하여

각 2013. 10. 18.부터 2014. 5.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과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0.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7. 접수 제101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기존의 계약당사자는 피고 A의 대표자 피고

B이었으나, 피고 B이 위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 A가 피고 B의 각 대출금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이하 구별 없이 피고 A를 계약당사자로 본다)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들로부터 아래 금원을 각 대출받았다.

2009. 2. 24.	중소기업은행	F	2014. 2. 24.	475,000,000원(500,000,000원)
2009. 12. 24.	하나은행	G	2010. 12. 24.	255,000,000원(300,000,000원)
2011. 3. 17.	중소기업은행	H	2012. 3. 16.	190,000,000원(200,000,000원)
2012. 9. 26.	중소기업은행	I	2013. 9. 26.	255,000,000원(300,000,000원)

나. 피고 B,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전부에 관하여, 피고 E은 그 중 위 2009. 2. 24.자, 2009. 12. 24.자, 2011. 3. 17.자 각 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에게 대출금을 변제기한(이자연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은행들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피고 A에 관하여 2013. 9. 23.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0. 18.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487,320,675원(=2009. 2. 24.자 보증 관련 39,620,478원 + 2011. 3. 17.자 보증 관련 190,847,347원 + 2012. 9. 26.자 보증 관련 256,852,850원)을, 하나은행에게 256,942,47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1. 14. 피고 A로부터 위 2009. 2. 24.자 보증에 관한 대위변제금 중 1,023,659원을, 2013. 12. 20. 17,891,500원을 각 회수함에 따라 현재 잔존하는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725,347,986원(2009. 2. 24.자 보증 관련 20,705,319원 + 2009. 12. 24.자 보증 관련 256,942,470원 + 2011. 3. 17.자 보증 관련 190,847,347원 + 2012. 9. 26.자 보증 관련 256,852,850원)이다.

바. 한편,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은 2013. 10. 7.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7. 접수 제1017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대위변제금 중 피고 A로부터 일부 회수한 각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385,879원이고, 2012. 9. 26.자 보증과 관련하여 278,75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049,556원을 지출하고 그 중 3,773,641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275,915원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 및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726,288,530원(=미회수 대위변제금 725,347,986원 + 확정지연손해금 385,879원 + 추가보증료 278,750원 +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275,915원) 및 그 중 위 미회수 대위변제금 725,347,986원에 대하여,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469,156,930원[=미회수 대위변제금 468,495,136원(=2009. 2. 24.자 보증 관련 20,705,319원 + 2009. 12. 24.자 보증 관련 256,942,470원 + 2011. 3. 17.자 보증 관련 190,847,347원) + 확정 지연손해금 385,879원 +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275,915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468,495,136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위 726,288,530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725,347,986원에 대하여,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69,156,930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468,495,136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3.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효성캐피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비록 장래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10. 7. 이후에 원고가 피고 A의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 D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2013. 9. 23. 피고 A가 회생절차를 받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3. 10. 18.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

1) 살피건대, 갑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으로 유일한 부동산인 가액 약 3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4,043,543,200원(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726,543,200원 +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190,000,000원 +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0,000원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061,000,000원 +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1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D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효성캐피탈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효성캐피탈은 피고 D이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며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어 조만간 이윤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무자력 상태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속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살피건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이 이윤을 창출하여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창출된 이윤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용이하게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효성캐피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효성캐피탈은 피고 A가 피고 효성캐피탈로부터 에폭시사출기 및 X-Ray 검사기 등 산업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리스하였는데, 피고 A가 피고 D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피고 D이 리스이용자변경 및 리스기간 연장을 위하여 피고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기계는 피고 D의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바, 결국 피고 D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영업을 지속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채무변제력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바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12. 12. 5. 및 2013. 8. 19. 피고 효성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리스기간 각 3년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각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D은 2013. 9. 27. 피고 효성캐피탈과 피고 A 사이의 위 각 리스계약을 인수하는 내용의 리스이용자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이 리스계약을 인수한 2013. 9. 27.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3. 10. 7.경에는 각 리스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이어서 리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와 피고 D은 별개의 회사로서 피고 A가 피고 D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효성캐피탈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D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영업을 지속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채무변제력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효성캐피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효성캐피탈은 피고 D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을 추진하고 채무변제력 및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존의 리스계약에 관한 이용자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3. 10. 7.에는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이어서 리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 효성캐피탈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효성캐피탈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효성캐피탈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효성캐피탈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김태환

판사이보경

별지